

P. R 필요 불필요

249

자 통 계	기 안 처	상 공 과 신 수 전	전 화 번 호	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
			2-6378	
상 정 담 임	상 공 과 장	사 업 국 장	계 1 부 시 장	시 장
관 계	문 서 담 임	총 무 과	내 무 국 장	
판 서 명	법 제 감 인	심 경 자 장		
기 안 년 월 일	64. 6. 27	64. 6. 27	보 존 년 한	
분 류 기 호	사 산 상 1343	전 체 통 제	종 결	정 서 기 장
경 수 참 유 신 조	거	의	발 신	
제 목	취발유 소화필증 취중요령 고시			
부정유류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요령을 보시한다 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자카				
서울특별시청을 차장				
코사제 호				
취발유 소화필증 취중요령				

고
시

확
정
과
법
제
인

6월 6일

18
27

1349

서울특별시

6

14

회발유 유류 소화필증 취급요령

회발유 유류 소화필증 제 17조 (소화증단속)에 의거 부정 회발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화필증 제도를 차후부터는 본 요령에 의하여 운영한다

취급요령

1. 은수영업용

종전 취급요령에 의거 계속 실시한다.

2. 관수용

현재까지는 소화, 미소화의 구별없이 기준량 (자동차) 혹은 신청량에 의거 배정하고 임의 사용케 하였으나 향후 배정량의 미소화시에는 미소화량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소수장의 미소화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가용

기준량에 의거 배정하고 그 배정량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소화치 못하였거나 부정 유류 (회발유) 조달의 근원이 있을시에는 관계 당국에 조사 의뢰한다

단" 기준량 초과 신청분에 대하여는 특별조치 하고 특별분에 한하여 소화필증 취급 요령에서 제외한다. 끝

196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랑 윤치영

안 2.

수신 공보살증

발사, 새 장

제목 동 건

부정 유류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별첨
요령을 송부 하오니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취별유 인화양등 취중 요령 1부 끝